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1-27

수 원 지 방 법 원

제 3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5구합97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redacted]

피 고 [redacted]

변 론 종 결 2015. 7. 21.

판 결 선 고 2015. 9.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 2.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70,327,400원의 부과처분 중 15,88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농어촌 특별세 6,615,540원의 부과처분 중 1,588,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등록세 70,502,620원의 부과처분 중 15,88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지방교육세 13,266,120원의 부과처분 중 3,176,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1-27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5. 27. A으로부터 [redacted]시 B건물 601호, 701호, 801호, 901호, 1001호(토지 740.57㎡, 건물 3888.64㎡,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대금 655,455,000원에 매수하였고, 2009. 6. 12. 위 매매대금 655,455,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13,109,100원, 등록세 13,109,100원, 농어촌특별세 1,310,910원, 지방교육세 2,621,820원 합계 30,150,93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2009. 1.경 주식회사 [redacte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설치되어 있는 영사장비 및 영화관 시설물을 대금 3,000,000,000원에 매수하였는데, 피고는 2014. 1. 2. 원고가 매수한 장비 및 시설물 중 이 사건 부동산과 일체를 이루고 있다고 판단한 카페트, 객석의자, 에어컨, 실외기(배관), 전등, 스텝라이트, 흡음재, 방음재, 방음문 등을 포함하여 대금 2,086,000,000원에 해당하는 시설물에 대해 취·등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대금 2,086,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70,327,400원, 등록세 70,502,620원, 농어촌특별세 6,615,540원, 지방교육세 13,266,120원(각 가산세 포함) 합계 160,711,68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2014. 2. 20.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2. 5. 위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1-27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과 일체를 이룬다고 판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시설물의 대금 합계 2,086,000,000원 중에서 카페트 156,000,000원, 객석의자 134,000,000원, 에어컨 361,000,000원, 실외기(배관) 300,000,000원, 전등 54,000,000원, 스텝라이트 86,000,000원, 흡음재 106,000,000원, 흡음재취부 37,000,000원, 흡음재(마이튼) 14,000,000원, 방음재 14,000,000원, 방음문 27,000,000원, 손잡이 3,000,000원 합계 1,292,000,000원의 시설물(이하 '이 사건 시설물'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고정된 것이 아니라, 분리가 가능하고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시설물이므로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시설물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부분은 위법하다.

또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치되어 있는 영사장비 및 영화관 시설물이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원고에게는 이 사건 시설물을 포함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설치되어 있는 영사장비 및 영화관 시설물 합계 2,086,000,000원에 대한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를 기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 또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시설물이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구 지방세법(2009. 6. 9. 법률 제97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1-27

조 제1항은 부동산을 취득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4조 는 제1호에서 '부동산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4호에서 '건축물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건축법(2009. 6. 9. 법률 제97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제2호는 '건축물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따르면,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건축물'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그 구조, 형태, 용도, 기능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건축물의 통상적인 용도에 부합하고 건축물의 유지와 효용가치 발휘에 필요한 설비나 시설은 건축물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갑 제3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그 공부상 용도가 영화관인 건물이고, 이 사건 시설물은 영화관 운영에 필요한 카페트, 객석의자, 에어컨, 실외기(배관), 전등, 스텝라이트, 흡음재, 방음재, 방음문 등의 시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시설물은 그 용도가 영화관인 이 사건 부동산의 통상적인 용도에 부합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효용가치를 유지하고 발휘하는 데 필요한 시설이므로, 이 사건 시설물은 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1-27

사건 부동산에 딸린 시설물로서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전등이나 객석의자 등이 주기적으로 교체된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위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참조).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시설물을 포함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치되어 있는 영사장비 및 영화관 시설물이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찾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부지나 착오는 원고의 취득세 등 신고·납부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오민석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1-27

판사 이광헌

판사 조 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1-27

관계 법령

[구 지방세법(2009. 6. 9. 법률 제97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부동산 :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3. 토지「지적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말한다.

4. 건축물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105조(과세대상)

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지방세법 시행령(2009. 6. 9. 대통령령 제215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3(취득가격의 범위)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1-27

[구 건축법(2009. 6. 9. 법률 제97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건축설비"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전화 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가스·급수·배수(배수)·배수(배수)·환기·난방·소화(소화)·배연(배연) 및 오물처리의 설비,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 게양대,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우편함, 저수조(저수조),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끝.